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년 7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7월 5일

3. 제안이유

- 민족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출토유물의 보존처리 및 활용을 통해 민족문화를 전승·보급하고 문화유산의 총체적인 보존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설립된 출연기관인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사의 행정재산에 대해 그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 대 상: 충청북도가 출연한 비영리 기관인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문화유산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기관: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재산위치: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4로 16
- 사용면적: 건물 2,912.11m², 토지 3,004m²
- 감면내역: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 적용시기: 2023. 7. 24.~2028. 7. 23.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

□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현황

- 개 소 일: 2005. 11. 7.
- 설립목적
 -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 출토유물의 보존 및 그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보급
 - 문화유산의 총체적인 보존관리체제 확립
- 주요사업
 - 문화재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 발간
 -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 지역 문화유산 자료수집 및 보관 전시
 -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위임, 위탁사업
 -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활동
 -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인 원:

(단위:명)

구 분	계	원 장	연구직	사무직	비 고
정 원	30	1	24	5	
현 원	29	1	23	5	

5. 검토의견

- 이번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사용료 감면)에 따라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사용하고 있는 도유(행정)재산에 대해 그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흥덕구 송정동에 도유 행정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했으며, 2017년까지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했으나, 2018년부터는 사용료 감면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았음.
- 이후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2023. 5. 15. 현재 위치의 건물로 신축 이전하였고, 새로운 도유 행정재산인 건물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존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과 같이 신축 건물인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행정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 됨
- 출연기관의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와 출연기관 임대사용료 지원의 행정과정을 제거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번 감면 동의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

붙임: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끝.